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신청대상 확대〉

■ 문정복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00602호)

2024. 8.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연 광 석

목 차

I . 개요	1
II . 검토의견	3

I. 개요

1. 문정복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602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문정복의원 등 11인

(2) 제 안 일 : 2024. 6. 18.

(3) 회 부 일 : 2024. 6. 19.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하도록 하고, 발급 대상 및 절차 등은 시행령으로 정하고 있음.

그런데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활동지원사와 같이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의 이동보조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의 경우 효과적인 이동보조를 위해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개정안은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대상 일부를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하고,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활동지원사,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 등도 주차표지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2항).

II. 검토의견

1.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신청대상에 활동지원사와 노인요양보호사 등을 추가하여 장애인의 이동권을 실질적으로 보호·증진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7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17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 ① (생략) ② 국가보훈부장관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u>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u> 신청하는 경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음을 표시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7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u> <u>에 해당하는 자가</u> ----- ----- ----- ----- ----- ---.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신설>	
<신설>	

<신 설>

<신 설>

<신 설>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등록한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 판정자

나.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
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다.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한 5·18민주화운동부
상자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같
이 하면서 함께 거주하는 배우
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
우자,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
우자 또는 자녀

4.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
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
나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으
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

5.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
률」 제27조에 따른 활동지원
사, 「노인복지법」 제39조의2
에 따른 요양보호사 등 보건복

③ ~ ⑦ (생략)	<u>지부장관이 정하는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의 이동보조를 수행하는 사람</u> ③ ~ ⑦ (현행과 같음)
------------	---

2. 검토의견

- 현행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이라 함)에서는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 등으로 하여금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이하 “주차표지”라 함)를 발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발급대상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음.¹⁾
-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주차표지 발급대상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 보행상 장애가 있는 상이등급 판정 국가유공자 또는 이들의 배우자, 직계혈족 등의 명의로 등록하여 사용하거나 임차한 자동차 등”으로 규정하고 있음.

1)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 ② 국가보훈처장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음을 표시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

⑦ 제2항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발급 대상·절차, 제3항에 따른 회수 및 재발급 제한의 기준·절차, 제5항에 따른 주차 방해 행위의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3(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발급 대상 및 절차) ①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발급대상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명의로 등록하여 사용하는 자동차 한 대

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같은 법 제32조의4제1항에 따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받은 결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나. 다음 각 구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하 “국가유공자등”이라 한다)

-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 판정자
- 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3)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한 5·18민주화운동부상자다.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과 다음의 관계에 있는 사람 중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같이 하면서 함께 거주하는 사람

1)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

3) 형제자매의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의 자녀

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한 재외동포나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

2. 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자동차 한 대

가.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시설대여를 받거나 임차한 경우

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를 수리 또는 정비 등의 이유로 사용할 수 없어 시설대여를 받거나 임차한 경우

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를 가지고 가기 힘든 도서지역에서 시설대여를 받거나 임차한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이 경우 법인격이 없는 시설·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로 한다.

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이하 “장애인복지시설”이라 한다)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복지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나. 「장애인복지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이하 “장애인복지단체”라 한다)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복지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다.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복지단체가 장애인복지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라.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의 명의로 등록하여 노인복지사업에 사용

하는 자동차

마.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각급학교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의 통학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

바. 「영유아보육법」 제26조에 따라 장애아를 전담하는 어린이집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아보육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으로서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

아. 법인·단체나 시설 등이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시설대여를 받거나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동차

②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소지(재외동포와 외국인인 경우에는 각각 국내거소지와 체류지를 말한다)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유공자들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 개정안은 「장애인등편의법」에 따른 주차표지 신청대상에 현행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에 더해 장애인의 신체활동, 가사활동 및 이동보조 등을 지원하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²⁾에 따른 활동지원사 및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노인복지법」 제39조의²³⁾에 따른 요양보호사를 추가하여, 운전면허가 없거나, 자동차를 보유하지 않는 장애인 등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실질적으로 증진시키고,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발급대상 중 일부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보다 명확하게 이들의 권익을 보장하는 바

2)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활동지원사) ①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활동보조급여를 제공하는 활동지원인력(이하 “활동지원사”라 한다)이 되려는 사람은 제28조제1항에 따른 활동지원사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수료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활동지원사의 교육과정, 교육내용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활동지원급여의 종류 등) ① 이 법에 따른 활동지원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활동보조: 활동지원인력인 제27조에 따른 활동지원사가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및 이동보조 등을 지원하는 활동지원급여

3)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요양보호사의 직무·자격등의 교부 등) ①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요양보호사를 두어야 한다.

람직한 입법취지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됨.

< 장애인 운전자 및 자동차 보유 현황 >

(단위: 명)

구분	2021	2022	2023
등록 장애인	2,644,700	2,648,424	2,641,896
장애인 운전자	632,258	645,776	654,569
자동차 보유 장애인	1,178,170		

주1): 장애인 운전자는 본인용 주차가능(주차불가 포함) 표지 발급 건수를 토대로 한 추정치

주2): 자동차 보유 장애인은 18세 이상 기준,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 결과 자동차 보유 가구 비율(46.1%)을 적용한 추정치[18세 이상 장애인수(2,555,685명) × 자동차 보유 가구 비율]

자료: 보건복지부

□ 우선, 개정안에서 시행령에 이미 규정되어 있는 주차표지 발급대상을 법률로 상향 입법하는 것은 법치 행정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임.

□ 다만, 관련부처는 주차표지 발급 제도 운영상 발급대상의 확대·축소 등 개정 수요가 빈번히 발생할 수 있음을 고려하면, 이를 법률에 규정하는 것이 효율적인지에 관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임.

- 보건복지부는 주차표지 발급대상을 법률에 규정하는 경우에는 개정 수요 발생 시 즉각적인 대처가 어려워지는 등 제도 운영에 유연성이 떨어질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 다음으로, 개정안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신청자에 활동지원사와 요양보호사를 추가하는 것에 대하여는 운전마저 어려운 보행장애가 있는 사람은 활동지원사 또는 요양보호사가 불가

피하게 운전해야 할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현 상황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는 측면이 있는 것이 사실임.

□ 다만, 다음과 같은 점도 추가적으로 고려하여 검토되어야 할 것임.

① 장애인주차구역 면수가 부족한 현 상황에서 보행장애로 인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이 반드시 필요한 사람의 주차 기회가 줄어들 수 있고, 활동지원사와 요양보호사의 다양한 업무를 고려할 때, 주차표지가 목적 이외의 상황에서 사용될 가능성도 상정할 수 있음.

< 장애인주차구역 면수 및 주차표지 발급 현황 >

(단위: 면/건)

구분	2021	2022	2023
장애인주차구역 면수	302,205	302,205	302,205
장애인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건수	507,031	513,115	516,479
면수 대비 발급 건수	168%	170%	171%

자료: 보건복지부

② 또한, 교통약자임에도 현재 주차표지 발급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임산부, 고령 어르신 등 다른 교통약자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그 실익 여부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임.

□ 보건복지부는 활동지원사와 요양보호사 개인 명의의 차량에 대한 주차표지 발급은 이들의 다양한 업무를 고려할 때 주차표지 목적

외 사용에 대한 우려, 주차표지 발급대비 장애인주차면수가 부족한 현 상황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난을 오히려 심화시킬 우려 등이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3. 관계 부처 및 단체 의견

1) 보건복지부(신중검토)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의 이용하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보행상 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비장애인에게 발급을 확대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활동지원사, 요양보호사 개인 명의의 차량에 대한 주차표지 발급은 이들의 다양한 업무를 고려할 때 주차표지 오남용 우려가 큼.
- 또한, 자기 차량을 이용한 이동지원은 장애인 활동지원사와 요양보호사가 반드시 수행해야 할 업무가 아니므로, 법률에 명시하는 경우 업무에 대한 의무 부여로 취지와 다르게 이해될 수 있음.
- 보행상 장애로 판정되지 못한 심한 장애인*의 주차표지 발급 요청 민원이 빈발하는 상황이고, 심하지 않은 장애인, 임산부, 고령의 어르신, 일시 부상(장애), 장기요양 등급자 등의 다양한 상황에 있는 표지 발급 민원**이 쇄도함에도 현행 규정에 따라 발급을 불허한 바 건의 수용 시 교통약자 간 사회적 갈등 소지 발생을 배제할 수 없음.

* (23.12월) 심한장애인 978,634명/ 표지 발급 대상(차량 소유) 451,150명/ 표지 발급 267,013명

** (민원종류) 지자체 규제개선, 국민신문고(일반, 제안), 청원24,

- 현재 주차표지 발급대비 장애인주차면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표지 발급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난을 심화시켜 보행상 장애인 당사자의 편의를 저해할 우려가 매우 큼.

* (2021년 12월 기준) 주차면수(302,205면), 표지발급(516,479매)

- 또한 보행상 장애인 생활에 밀접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대상을 법률로 상향할 경우 개정 수요 발생 시 즉각적인 대처가 어려워지는 등 제도 운영에 유연성이 떨어지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에 ‘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 표지의 발급대상’을 규정하고 있어, 관계 법령간 균형을 고려할 때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대상을 법률로 상향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2) 한국장애인개발원(신중검토)

- 장애인 이동의 편의를 돕기 위한 입법 취지에는 동의

- 다만, 활동지원사, 요양보호사 명의의 차량으로 주차표지 대상을 확대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주차표지 오·남용과 이용대상자의 확대에 따라 기존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어 입법 취지에 적합한 차량의 개조 확인, 주차표지 발급 대상과 이용 범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비율 정비 등 관련 지침 및 기준 등이 함께 정비될 필요가 있음.

- 특히, 요양보호사가 요양보호사 명의의 자동차를 통해 이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 경우 그 대상이 장기요양등급자, 긴급돌봄대상자 등으로 광범위하게 확대될 수 있어 기존 주차표지발급 대상자의 장애인주차구역 이용편의가 상당히 저해될 수 있는 우려가

있음.

- 아울러, 활동지원사, 요양보호사의 차량을 통한 장애인 이동지원서비스 제공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발생 시의 책임과 보상 한계 정비, 교통비 정산과 이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1조의 위반 소지에 대한 검토 등 개정법률안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 또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세부 대상자를 법률로서 정함에 따른 개정 및 정비 등 제도 운영상의 어려움이 있어 보임.

다. 한국지체장애인협회(개정반대, 신중검토)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주차 가능 표지를 장애인 활동지원사, 요양보호사까지 광범위하게 확대하는 금회 개정안에 반대함.
- 활동지원사, 요양보호사에게 발급된 주차 가능표지가 오남용 되어 사용될 우려가 있으며, 이로 인해서 오히려 장애인 당사자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부족 문제가 심화될 우려가 높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설치율을 현행보다 높여야 함.
- 활동지원사, 요양보호사가 해당 업무를 중단할 때 발급된 표지의 회수가 즉시 이루어지지 않거나, 불법으로 사용될 때 혼선이 발생할 수 있음.
- 따라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주차 가능 발급을 ‘등록 차량’을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기준을 ‘보행상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 당사자’를 대상으로 변경하면 당사자의 개인 소유가 아닌 차량에서도 사

용할 수 있으므로 장애인등의 이동권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음.

- 현행 「장애인등편의법」 제17조제7항에 따라 동법 시행령 제7조의 3에서 정하고 있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주차표지 발급 대상을 ‘시행령’이 아닌 ‘법’으로 지정하여 신설하는 개정으로 인한 별도의 추가 효과는 기대되지 않음.

라. 전국활동지원사노동조합(법안철회 요청)

- 현행 제도에서 활동지원사의 차량을 이용한 서비스를 금하고 있으며, 노동자에게 장애인 이동편의에 대한 책임과 부담을 지우는 법안 철회요청
 - 활동지원사가 자차를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다가 사고가 났을 경우 백이면 백 활동지원사가 그 비용을 모두 감수해야 하며, 심한 경우 장애인이용자가 사고에 따른 위로금이나 치료비 등을 요구한 사례도 있음.
 - 이러한 상황에서 활동지원사에게 대놓고 차량서비스를 제공하라고 권하는 법을 발의한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

마. 국가보훈부(수정요청)

- 현행 「장애인등편의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이 가능한 대상은 개정안 가 ~ 다목 이외에 아래의 대상이 해당됨.

- 독립유공자 중 애국지사 전원, 보훈보상대상자 및 지원대상자

* 보훈보상대상자 및 지원대상자는 군인, 경찰, 소방공무원으로서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었거나 사망한 사람임

□ 해당 개정안의 개정목적은 장애인의 효과적인 이동보조를 위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가능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므로, 기존에 주차표지 발급이 가능했던 보훈대상자가 누락 없이 개정안에도 모두 포함되도록 수정 요구

문 의 처
02)6788-5502